

## 수수료 부과 기준

제정 : 2011.09.27  
개정 : 2011.10.10  
개정 : 2011.11.17  
개정 : 2012.01.18  
개정 : 2012.04.16  
개정 : 2012.06.04  
개정 : 2015.05.20  
개정 : 2015.11.05  
개정 : 2016.01.04  
개정 : 2016.01.06  
개정 : 2016.06.27  
개정 : 2017.01.26  
개정 : 2017.04.10  
개정 : 2017.06.26

**제 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수수료)에 따라 케이알선물 주식회사의 수수료에 대한 기준 및 수수료의 부과에 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 167조에 따라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 별지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2조 (기본 수수료)** ① 기본 수수료는 결제기준에 의해 승인된 기준을 따르며 국내선물, 해외선물 등 수수료 수익 내 모든 품목에 대해 별지1에 따른다.

② 기본수수료의 변경은 회사 전결기준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금융투자 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2조에 따라 협회에 통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 일 7영업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 3조 (협의수수료)** ① 회사는 위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며, 국내 및 해외선물 등 회사가 위탁받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기본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모든 위탁자 계좌에 적용한다.

② 회사는 영업경쟁력 제고목적과 고객별 위험분석 및 회사기여도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에 협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2에서 정한 협의수수료 기준에 따라 위탁

자별, 계좌별로 다른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위탁수수료 계산시 1원 미만의 금액은 사사오입(四捨五入)한다.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절상 또는 사사오입 할 수 있다.)

**제 4조 (협의 수수료 적용절차)** 제5조의 협의 수수료의 적용 절차는 각항의 순서에 의한다.

① 위탁자의 수수료 변경요청 시 해당 계좌관리자(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장이 담당하며 이하 동일함)가 협의를 통해 적절한 협의수수료를 결정된 후 품의서를 작성하여 별지2의 전결기준에 따라 결재를 득한다. 단, 품의서에는 협의 수수료 적용을 위한 제5조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의 변경요청은 위탁자가 직접 신청서 작성 후 거래인감 날인(내방 신청시) 또는 유선으로 신청을 접수받은 직원이 신청서 작성 후 통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하며 계좌관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③ 계좌관리자는 결재된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수료 및 적용일자를 품의내용에 따라 수탁팀 및 전산팀 등 지원부서와 요청한 위탁자에게 통보한다.

**제 5조 (협의 수수료 적용사유)** 별지2에 따라 적용 받는 협의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 각항에서 정하는 사유 중 하나 이상을 기재하여야 하며, 협의수수료의 적용을 할 경우에도 최저 협의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중 회사가 유관기관에 지급하는 제거대 비용과 회사의 소요비용의 합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① 위탁자의 거래규모 :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자)이거나 거래규모가 통상 위탁자 구분에 따른 거래규모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규모는 당사 및 타 경쟁 업체를 통한 기준 거래규모뿐 아니라 동 위탁자의 향후 거래규모, 성장 가능성을 포함하며, 이때 기관투자자 여부, 운용자산 또는 예탁자산의 규모등을 보조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탁자의 신용도(위험도) : 위탁자의 신용도가 높고 거래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탁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위험도는 회사와의 거래시의 의의이행여부, 거래 유형(헤지거래 or 투기거래), 사회적인 지명도와 신뢰성, 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영업경쟁력 : 동종업계내 회사의 영업경쟁력을 유지,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자가 동종업계에서 파생상품거래시 적용받는 위탁수수료를 비교판단 기준으로 하여 위탁수수료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서비스의 제공 범위 : 위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통상의 서비스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 위탁수수료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범위는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양적 또는 질적 서비스의 부담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며 전산서비스지

원, 시황/시장정보 제공,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다.

⑤ 대량주문 : 협의대량거래 또는 주문건당 평균계약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위탁수수료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위탁자의 기여도 :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기타 : 특정 팀 및 지정, 관리자에 대한 영업력 향상, 상품 거래 활성화의 목적, 연구목적의 계좌 등 회사의 영업정책이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수수료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6조 (협의 수수료 재심사)** 협의 수수료 적용시에는 위탁자별, 상품별 적용기간을 1~6개월로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의 만료 또는 적용일 이후 1개월 경과시 담당영업부서장의 필요에 따라서 협의수수료 적용계좌의 적정성을 재심사하여 협의수수료 적용이 불필요한 계좌 또는 협의수수료로서 적용된 위탁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협의 수수료 적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특정 수수료)** ① 회사가 영업정책상 특정고객, 특정기간, 특정조건 등을 정하여 협의수수료 기준 외에 별도의 특정 수수료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정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 기간, 수수료를 정하여 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와 협의한 후 대표이사의 결제를 득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특정 수수료를 적용하는 계좌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동의방법은 서면(별지 4 특정수수료 적용동의서), 통화(녹취), hts상의 동의절차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특정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동의한 특정한 조건이 달성(또는 미달성)됨에 따라 기본수수료로 환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기본수수료로 환원할 수 있다

**제8조(FX마진 협의수수료)** FX마진고객은 거래시 발생한 스프레드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할인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1. 국내 위탁 기본 수수료

품목		매매 위탁수수료	인수도, 최종결제, 권리 행사, 위탁수수료	비 고
주가지수선물		HTS-0.005% 일반-0.025%	HTS-0.025% 일반-0.025%	
미니주가지수선물		HTS-0.005% 일반-0.025%	HTS-0.025% 일반-0.025%	
주가지수 옵션	~0.39 (체결가격)	HTS-400원/1계약 일반-1,600원/1계약	HTS-0.15% 일반-0.60%	
	0.4~3.99 (체결가격)	HTS-0.15% 일반-0.60%		
	4.0~ (체결가격)	HTS-3,000원/1계약 일반-12,000원/1계약		
미니 주가지수 옵션	~0.39 (체결가격)	HTS-80원/1계약 일반-320원/1계약	HTS-0.15% 일반-0.60%	
	0.4~3.99 (체결가격)	HTS-0.15% 일반-0.60%		
	4.0~ (체결가격)	HTS-600원/1계약 일반-2,400원/1계약		
유로스톡스 50 주가지수선물		HTS-0.006% 일반-0.03%	HTS-0.006% 일반-0.03%	
국채선물 (3년, 5년, 10년)		HTS-3,500원/1계약 일반-7,500원/1계약	HTS-3,500원/1계약 일반-7,500원/1계약	
금선물		HTS-4,000원/1계약 일반7,000원/1계약	HTS-4,000원/1계약 일반7,000원/1계약	
통화선물 (미국, 엔, 유로선물)		HTS-6,000원/1계약 일반-1,500/1계약	HTS-600원/1계약 일반-1,500/1계약	
미국달러옵션		HTS, 일반1.5% (min1,000원)	HTS, 일반1.5% (min1,000원)	

2. 해외 위탁 기본 수수료

구 분	체 결	비 고
일반&미니선물	HTS-\$8 일반-\$12	편도
마이크로통화선물	HTS-\$2 일반-\$4	편도
FX마진	\$6	편도

(별첨2)

수탁팀	
담당	팀장

영업 및 총괄			
영업부서		담당임원	
담당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 협의 수수료 적용 요청서

위탁 수수료 부과기준 제 3조, 4조(협의수수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 수수료 변경을 요청합니다.

변경 적용 희망일 : \_\_\_\_\_  
 신청 자 : \_\_\_\_\_ (인)  
 통화 시간 : \_\_\_\_\_  
 내 선 번호 : 내선 \_\_\_\_\_

계좌번호	계좌명	상품	변경전 수수료	변경후 수수료	관리사원

\*협의 수수료 적용 요건 :

**KR선물(주)**

(별첨3)

수탁팀	
담당	팀장

영업팀		담당임원	
담당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 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적용 요청서(개인)

위탁 수수료 부과기준 제 3조, 4조(협의수수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 수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

변경 적용 희망일 : \_\_\_\_\_  
 신청 자 : \_\_\_\_\_  
 통화 시간 : \_\_\_\_\_  
 내 선 번호 : \_\_\_\_\_

가. 계좌 정보 및 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예시)

계좌번호	계좌명	거래 수수료	월말 소급 적용 수수료 (최저)

나. 거래량 구간 조건

월말 소급 적용 수수료	협의 수수료 적용 조건 (거래량 구간)	비 고

단, 기본수수료에 대해 70% 이하의 협의수수료율은 본부장 전결사항이나, 71% 초과 협의수수료율은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요.

다. 환급 지정 계좌

계좌번호	계좌명

※협의 수수료 적용 요건 : <별지4>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적용 요건 적용

**KR선물(주)**

(별첨4)

수탁팀		영업팀		담당임원	
담당	팀장	담당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 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적용 요청서(단체)

위탁 수수료 부과기준 제 3조, 4조(협의수수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 수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

변경 적용 희망일 : \_\_\_\_\_  
 신청자 : \_\_\_\_\_  
 통화시간 : \_\_\_\_\_  
 내선번호 : \_\_\_\_\_

가. 단체 지정 계좌 정보 및 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예시)

단체 계좌번호	계좌명	거래 수수료	월말 소급 적용 수수료(최저)	환급 지정 계좌 (본인 명의만 가능)

나. 단체 거래량 구간 조건

월말 소급 적용 수수료	협의 수수료 적용 조건 (거래량 구간)	비고

단, 기본수수료에 대해 70% 이하의 협의수수료율은 본부장 전결사항이나, 71% 초과 협의수수료율은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요.

※협의 수수료 적용 요건 : <별지4>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적용 요건 적용

**KR선물(주)**

(별첨5)

수탁팀		영업 및 총괄			
담당	팀장	영업팀		담당임원	
		담당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 특정 수수료 적용 동의서

가. 계좌 정보 및 특정 수수료

계좌번호	계좌명	상품	특정수수료	기본수수료

나. 특정수수료 적용 기간 및 조건

적용 기간	적용 조건	비고

본인은 상기 계좌의 특정수수료 적용에 동의하며, 적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적용조건이 달성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즉시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계좌번호 : \_\_\_\_\_  
 통화시간 : \_\_\_\_\_  
 내선번호 : \_\_\_\_\_  
 담당자 : \_\_\_\_\_ (인)  
 고객명 : \_\_\_\_\_ (인)

**KR선물(주)**

(별첨6)

협의 수수료 적용 요건

인 하 율	협의 수수료 적용 요건
1%이상~ 35%이하	① 전문투자자 ② 최근 3개월 예탁금 평잔 <b>5백만원(\$5,000)</b> 이상인 계좌 ③ 최근 3개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b>1백만원(\$1,000)</b> 이상인 계좌 ④ 신규개설계좌 또는 향후3개월의 예탁금 평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②,③항의 기준에 도달이 예상되는 계좌중에서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계좌
36%초과~ 70%이하	① 전문투자자 ② 최근 3개월 예탁금 평잔 <b>2천만원(\$20,000)</b> 이상인 계좌 ③ 최근 3개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b>3백만원(\$3,000)</b> 이상인 계좌 ④ 신규개설계좌 또는 향후3개월의 예탁금 평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②,③항의 기준에 도달이 예상되는 계좌중에서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계좌
71%초과 ~ 제비용	① 전문투자자 ② 최근 3개월 예탁금 평잔 <b>5천만원(\$50,000)</b> 이상인 계좌 ③ 최근 3개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b>8백만원(\$8,000)</b> 이상인 계좌 ④ 신규개설계좌 또는 향후3개월의 예탁금 평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②,③항의 기준에 도달이 예상되는 계좌중에서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계좌

※ 신규고객의 경우 개설이후 3개월 이내의 계좌.

※ 70%이하의 협의수수료율은 본부장전결사항이나, 71%초과 협의수수료율은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요함.

(별첨7)

협의 수수료(FX마진) 적용 조건

할인 금액	거래비용 할인 적용 조건
\$3 이하	①전문투자자 ②최근 3개월 예탁금 평잔 2천만원(\$20,000) 이상인 계좌 ③최근 3개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1백만원(\$1,000)이상인 계좌 ④신규개설계좌 또는 향후3개월의 예탁금 평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②③항의 기준에 도달이 예상되는 계좌 중에서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계좌
\$3초과 ~ \$4 이하	①전문투자자 ②최근 3개월 예탁금 평잔 5천만원(\$50,000) 이상인 계좌 ③최근 3개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4백만원(\$3,000)이상인 계좌 ④신규개설계좌 또는 향후3개월의 예탁금 평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②③항의 기준에 도달이 예상되는 계좌 중에서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계좌
\$4 초과 ~ \$5이하	①전문투자자 ②최근 3개월 예탁금 평잔 1억원(\$100,000) 이상인 계좌 ③최근 3개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8백만원(\$8,000)이상인 계좌 ④신규개설계좌 또는 향후3개월의 예탁금 평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②③항의 기준에 도달이 예상되는 계좌 중에서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계좌
\$5 초과	①전문투자자 ②최근 3개월 예탁금 평잔 3억원(\$300,000) 이상인 계좌 ③최근 3개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1천5백만원(\$15,000)이상인 계좌 ④신규개설계좌 또는 향후3개월의 예탁금 평잔, 위탁수수료 지급액이 ②③항의 기준에 도달이 예상되는 계좌 중에서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계좌

※ 신규개설계좌라 함은 개설이후 3개월 이내의 계좌.

※ \$5이하의 거래비용 할인은 본부장전결사항이나, \$5 초과 거래비용 할인은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요함.

(별첨8)

### 거래량 연동(해외선물) 협의 수수료 적용 요건

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기준표(일반 상품 기준)

월말 소급 적용 수수료	협의 수수료 적용 조건 (거래량 구간)	비 고
\$5.2 ~ \$8.0 中 택1	월중 거래량 0계약 ~ 65계약	CTS 이용시, \$5.2-\$10 中 택1
\$3.01 ~ \$5.19 中 택1	월중 거래량 66계약 ~ 330계약	CTS 이용시, \$3.01-\$5.19 中 택1
\$3.0 이상 中 택1	월중 거래량 331계약 이상	CTS 이용시, \$3.0 이상 中 택1

- ▶ 마이크로 상품은 해당 사항 없음
- ▶ 단, 기본수수료에 대해 70% 이하의 협의수수료율은 본부장 전결사항이나, 71% 초과 협의 수수료율은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요.

- ※ 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적용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매해 체결 시 적용된 거래 수수료 합에서 월말 소급 적용 수수료 합 간의 차액으로 한다.
- ※ 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 신청한 뒤 기존 거래수수료를 협의/변경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신청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량에 대하여 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 ※ 월말 기준으로 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체계에 의해 소급 적용 수수료를 정산할 시, 월말 소급 적용 수수료가 고객의 거래수수료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해야 할 수수료에 관해서는 추가징수하지 않는다.
- ※ 거래량 구간을 평가 시 10일까지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당월 말일, 10일 이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익월 말일까지의 거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하고 정산한다. 단,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10일 이후에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도 당월 말일 기준으로 거래량을 평가하고 정산할 수 있다.
- ※ 동일인이 복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합산을 원하는 계좌들을 지정하여 해당 계좌들의 합산된 거래량으로 협의 수수료 적용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특정 계좌로 환급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동일인이 아니면서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그 단체에 해당하는 계좌들의 합산된 거래량으로 협의 수수료 적용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환급은 거래된 계좌 또는 거래 계좌와 동일한 명의인의 타 계좌로 지급될 수 있으나, 거래된 계좌와 다른 명의인의 계좌로는 지급될 수 없다.
- ※ 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신청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량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익월에 정산 지급한다.
- ※ 거래량 연동 협의 수수료 신청일이 당월 초 5영업일 이내이고 전월에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월 거래량에 대한 정산을 당월 초 10영업일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